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김천행복한요양원

제 10 장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제80조 (계약목적)

1.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81조 (계약대상자)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요청이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제82조 (계약기간)

1. 입소 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2.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83조 (계약만료 및 재계약)

1.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후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나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3. 입소자나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84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별지1]**를 참조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2.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3.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제8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제86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87조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88조 (입소자의 책임)
1. 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3.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제89조 (계약의 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애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계약해제요건

1) 시설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단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입소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2) 월 이용료 또는 기타 입소자가 시설에 납부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 했을 때
(3) 월 이용료의 빈번한 납부지연으로 시설과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칠 때
(4) 장기부재로 계약을 계속 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5)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2. 입소자의 계약해제

1) 입소자는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 해지 통보를 제출하되 계약 해지일은 15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두며 지정된 계약 해지일에 본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2) 입소자는 전항의 계약 해지일까지 시설에서 퇴거하며 입소자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고 시설에서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퇴거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째 계약 해지일로 한다.

제90조 (퇴소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4. 기타 시설장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91조 (건강진단서)

입소자(보호자)는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시 1개월 이내의 건강진단서(결핵검사 포함) 및 병적기록을 시설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감염병에 대한 정기검사로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별지1]

2025년 김천행복한요양원 입소비용

1.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수가

(단위 : 원/일)

등급	수가
1	90,450
2	83,910
3~5	79,240

2. 비급여 항목 내역

식사재료비 : 1일 3식 6,600원 (식사 1회 당 2,200원)

[1개월 입소 비용 계산법]

(예) 1등급 어르신께서 30일을 김천행복한요양원에 계실 경우

1등급 1일 입소 수가 x 30일 x 본인부담율(20%, 12%, 8%) =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 = 한 달 시설 입소 비용

※ 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무료

30일 이용 시 부담하시는 총 비용(**본인부담율 20% 기준**)

1등급	2등급	3~5등급
740,700	701,460	673,440

31일 이용 시 부담하시는 총 비용(**본인부담율 20% 기준**)

1등급	2등급	3~5등급
765,390	724,840	695,880